

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2 (투자신탁 의 전환)	<p>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8. <u>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</u></p>	<p>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8. <u><삭제></u></p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	<p>[1] 투자전략</p> <p>3. <u>운용전문인력</u> (생략)</p>	<p>[1] 투자전략</p> <p>3. <u>운용전문인력</u> (업데이트)</p>
III.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	<p>2. <u>전환절차 및 방법</u></p> <p>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 <p>펀드명 : <u>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</u></p>	<p>2. <u>전환절차 및 방법</u></p> <p>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 <p><삭제></p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 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생략)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 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 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 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 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 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 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 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